

## 6·25전쟁 시 국제사회의 대한(對韓) 물자지원 활동

- 1950년~58년 유엔의 한국 물자지원 재정립을 중심으로 -

양 영 조\*

1. 머리말
2. 유엔의 개입과 물자지원 조치
3. 물자지원기구의 주요 활동
4. 유엔을 통한 각국의 물자지원 활동과 규모
5. 맺음말

### 1. 머리말

6·25전쟁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너무나 큰 피해의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을 통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은 민생안정과 전후복구뿐만 아니라 재건과 개발에 있어 절박한 재원이었다.

\*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

유엔군은 미국의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 ECA)뿐만 아니라 유엔 계통의 한국민간구제단(Civil Relief in Korea : CRIK),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sup>1)</sup>, 유엔한국재건단(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UNKRA) 등의 기구를 통해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비회원국들에게도 지원을 호소하였다. 전쟁 중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받은 구호원조의 총액은 4억 7천 1백 9십만 달러였다.<sup>2)</sup>

1958년도에 유엔기구를 통한 원조가 모두 종결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 원조는 모두 미국에 의한 원조로 한정되었고, 미국의 원조도 구호원조(무상원조)에서 개발원조(공공기관)로 전환되었다. 이때까지 미국과 유엔 원조기구를 통한 무상원조의 총액은 매년 3~4억 달러의 군사원조 액수를 제외하고도 3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sup>3)</sup>

전체 원조액 가운데 유엔을 통해 도입된 원조가 20%를 차지하였고, 유엔 관련 원조에서도 미국 지원 비율이 민간구제단 원조의 경우 97%, 한국재건단(UNKRA) 원조의 경우 66%에 해당하였다.<sup>4)</sup>

6·25전쟁 시 유엔과 국제사회의 물자지원 및 물자지원국 현황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결과가 제출되어 있다.<sup>5)</sup>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국의

---

1) UNCACK(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는 전쟁 당시 '유엔민사처'로 주로 호칭되었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88쪽.; 국방부, 『한국전쟁 2년지』, 1952, C459쪽.

2)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79, 140쪽. 1953년 기준 4억 7천 1백 9십만 달러는 현재(2011년) 가치로 약 38억 7천 3백 8십만 달러이다.

<http://www.dollartimes.com/calculators/inflation.htm>

3)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까지 유엔 기관인 CRIK와 UNKRA 등과 미국 원조기관인 GARIOA 및 AID 등을 통한 외원획득 총액(군원 제외)은 약 30억 달러(무상원조)에 달하였다. 위의 책, 142쪽.

4) 예종영, 「한국전쟁과 국제경제기구 : 미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2004, 164~165쪽.

5) 최원규, 「한국전쟁중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의 전제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제8호, 1996; 서용선, 『한국전쟁 지원사 : 인사군수민사 지원』, 국방군사연구소, 1997; 손문식, 『유엔군 지원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이신화,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 인도적 문제와 구호재건 활동을 중심으로」, 강성학 편, 위의 책; 예종영, 「한국전쟁과 국제경제기구 : 미국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강성학 편, 위의 책; 김집숙,

정확한 지원물자 품목과 액수, 그리고 지원날짜 등 물자지원국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못한 편이다. 그것은 주로 자료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지원규모나 지원기구 자체에 관심을 둔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6·25전쟁 지원국과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어떤 시기에 어떤 국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무엇을 지원하였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지면상 참전부대를 파견한 16개국과 의료부대를 파견한 5개국 등 21개국의 지원 내용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였으며, 또 연구의 대상 시기는 전쟁기간 중 약속한 물자가 전쟁기간부터 1958년에 걸쳐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50년부터 1958년까지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기구들이 생산한 1차 보고서들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이외 유엔연감, 한국경제연감, 한국전란 1~5년지 등의 공식기록들을 활용하였다.<sup>6)</sup>

「6·25전쟁과 유엔의 역할 : 온크라 원조를 중심으로」 『나라사랑 학술논문집』 제1집, 2005, 국가보훈처; 허은, 「1950년 전반 미국의 정치와 한국 사회 헤게모니」 『한국사연구』 제133호, 2006; 김학재, 「한국전쟁과 인도주의적 구원의 신화 : 북한점령시기 주한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창설 과정과 성격」 『사림』 제33호, 2009.

6) 국방부, 『한국전란 1~5년지』, 국방부, 1951~1956; 한국은행조사부, 『경제연감』, 한국은행, 1956;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외무부, 1979; UNCACK,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UNCACK) 1951, RG338, Box17, Unit History, File No.3147; UNCACK, *Statistical Report on Status of CRIK supplies Received against FY 1951*; CRIK, *Estimated dollar value on UN contributions by contributing Nation for CRIK(25 June 1950-22 May 1952)*, 1953; CRIK, *Statement of government pledges and contribu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ertaining to the Emergency Relief Programme, Korea, as at 30 June 1956*; UNKRA, *Statement of Contribution Received and Anticipated through FY 1953*, 1954; UNKRA, *Statement of government pledges and contributions to the UNKRA as at the 30 June 1956*; US 8th Army Civil Affairs Section, *Civil Assistance Files, 1950*, NARA, RG 338(미 육군사령부문서군), Entry A1 179, Box 1437, Folder : Nov, Dec 1950); UNC, *Command Report for 1950.9.3-1951.8.31*); UN, *Yearbook of the UN*, UN, 1952~1958; General Records Department of State, *Contributions by Govts Other than US*, RG 59, UD-07D78, Box.2. 이들 자료들은 주로 방선주 교수와 월드피스 자유연합 안재철 대표,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자료와 국방부가 2012년 3월 NARA(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 중 RG 59(미 국무부 일반문서군)에는 물

## 2. 유엔의 개입과 물자지원 조치

6·25전쟁 초기 정부는 국토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국민들이 재산과 물품을 약탈당하여 전반적으로 물자 부족 현상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남침 초기부터 북한군의 저지와 함께 시급한 구호사업을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지원요청을 받은 유엔안보리는 1950년 6월 27일과 7월 7일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결의하였고, 7월 13일에는 유엔군사령관의 요청으로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회원국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7월 14일자 결의로서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 양면의 원조를 제공하되, 미국 통할하의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을 지원하도록 결의하였다. 아울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50년 7월 31일 한국 민간인에게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민간인 구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sup>7)</su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 국민이 당하고 있는 인고와 고통을 인식하고(중략)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한국 국민의 구제와 급양에 필요한 품목의 결정과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며,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요구한 구제와 급양에 관한 원조물자를 조달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구호사업에 관한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에게는 경제이사회, 유엔의 유관기관, 기타 비정부기관 등에도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하여 한국 민간인에 대한 원조요청을 하도록 하였다.

유엔의 지원요청 결의안은 이후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 민간인 구호에

---

자지원국 관련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7)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 1954, p.C109;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39쪽.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제479차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가 민간인 구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유고슬라비아가 기권하고 나머지 9개국의 찬성을 얻어 채택되었다.

관한 필요사항을 결정짓는 임무와 구호물자를 현지에서 분배하는 절차 등을 결정,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1950년 8월 중순 유엔사무총장과 유엔군사령관은 물자의 요청과 공급 절차 등을 협의 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물자지원에 관한 세부절차들을 마련하였다.

먼저 유엔군사령부가 구호에 절실한 물품의 원조요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사무총장은 지원 능력이 있는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을 검토하여 그것을 해당 국가와 기구에 전달하며, 또 해당 국가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다시 그것을 유엔군사령부에 전달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지원 신청목록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그 후부터는 유엔군사령부가 해당 정부 및 기관들과 직접 협조하여 물자 명세를 결정짓고 또 한국으로 수송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협의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유엔은 한국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였다.

한편 유엔총회는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할 무렵인 1950년 10월 7일 통일된 한반도의 건설과 구호 및 재건업무를 수행할 기구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창설하였다.<sup>8)</sup> 이어 동년 11월 14일에는 한국국민들에게 구호물품과 경제재건 원조가 긴급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한국구제재건 계획을 결의하였다. 유엔총회는 1951년 1월부터 1년간 예상되는 약 2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사용계획안을 검토하도록 경제사회이사회에 요구하였다. 이에 통일부흥단(UNCURK)도 1951년 1월 31일 세계 각국 정부와 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요청서를 전달하였다.<sup>9)</sup>

(전략)지난 11월 말에는 해결된 듯이 보이던 피난민 문제가 다시 제기 되었으며 집 잃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침구류, 의류, 신발, 약품 등을

8) 유엔한국통일부흥단의 영문 명칭은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UNCURK)이다.

9)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C184~185쪽.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고 조기에 끝날 것처럼 보였던 전쟁은 이전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작전지역의 도시, 촌락, 공장, 동력시설들은 수없이 파괴되고 있다.(하략)

유엔군사령부는 물자지원 요청과 공급 등의 절차가 마련되자 유엔으로부터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를 지원받아 한국정부 대표, 유엔대표들과 협조하여 원조물량을 산출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아울러 유엔군사령부는 매 15일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작전보고서에 수시로 물자지원국을 확대시켜 줄 것을 강조하였다.<sup>10)</sup>

유엔군사령부는 물자지원 절차에 따라 긴급구호물자에 대해선 총 16차례 아래와 같이 유엔에 특별히 요청서를 제출하였다.<sup>11)</sup> 유엔군사령부의 요청 중 12차례의 요청은 보급물자의 요청으로 금액으로는 약 5천 6백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나머지 4차례의 요청은 기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군사령부는 먼저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유엔사무총장에게 8차례 긴급 구호품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 4백만 달러에 상당하였으며, 주요 요청 내용은 약품, 의료보급물자, 공공보건단체 파견, 보건위생 전문가 파견, 곡물, 사탕, 식염, 일반보급품 등이었다.

그 결과 미국의 긴급조치 구호품에 의존하던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구호활동은 10월부터 점차 활발해졌다. 그러나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구호계획과 물자수요가 크게 변화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주민들이 대규모로 월남하자 백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구호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 12일부터 1951년 1월 10일까지 추가로 다시 8차례 물자를 요청하였다. 이는

10) 서용선, 『한국전쟁 지원사』, 232쪽.

11) 국방부, 위의 책, C189~190쪽.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천 4백 7십만 달러에 상당하였고, 그 내용은 모포, 의료보급품, 목재, 보건후생요원, 교육용 보급품, 피복 등이었다.

〈표 1〉 유엔군사령부의 긴급 물자지원 요청 현황(1951.2.7)<sup>12)</sup>

순번	요청일자	요 청 내 용	평가금액 (달러)	대상국가, 기구
1호	1950. 8. 5	의료보급품 29종	735,000	34개 회원국, WHO, IRO
2호	1950. 8. 5	지방단위 보건반(의료요원 : 5명, 후생전문가 : 5명, 행정관 : 5명)	-	WHO, IRO
3호	1950. 9. 1	국가단위 보건위생요원(단장, 보건관, 보건후생관, 행정관 각 1명)	-	WHO
4호	1950. 9. 5	미곡 : 40,000톤, 대맥 : 4,100톤	6,875,000	12개 회원국
5호	1950. 9.14	미곡 : 20,000톤, 대맥 : 27,400톤, 소맥 : 20,000톤, 소맥분 : 10,000톤, 단백질식물 : 10,000톤	7,912,500	15개 회원국
6호	1950. 9.16	사탕 : 3,000톤	375,000	8개 회원국
7호	1950. 9.18	식염 : 50,000톤	1,250,000	2개 회원국
8호	1950. 9.20	일반보급품 13종 (천막, 모포, 모직, 면피복, 비누, 우유 등)	14,378,000	54개 회원국, UNICEF
9호	1950.10.12	모포 : 1,000,000	2,000,000	11개 회원국, IRO, UNICEF
10호	1950.11. 6	의료보급품 12종	3,236,830	전회원국, IRO, UNICEF
11호	1950.11. 1	목재 : 110,000톤	500,000	13개 회원국
12호	1950.11.11	보건후생요원(보건관 : 9명, 보건후생관 : 9명, 위생전문가 : 9명, 행정관 : 1명, 보급관 : 1명)	-	WHO, 적십자사연맹
13호	1950.11.28	보건후생원(보건관 : 5명, 후생관 : 5명, 위생전문가 : 5명, 행정관 : 4명, 재무관 : 3명, 노무관 : 2명, 토목기술자 : 5명, 보급관 : 5명)	-	ILO, WHO, IRO
14호	1950.12. 4	교육용 보급물	4,000,000	UNESCO
15호	1951. 1. 3	의료보급품	-	제10호와 동일
16호	1951. 1.10	피복	15,000,000	전회원국, UNICEF, 기타 비정부기관

12) 위와 같음.

이와 같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유엔사무총장은 이들 요청을 충족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국 정부(미국 제외)와 기관, 국제기구 등에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긴급 물자지원 요청 현황을 정리하면 앞의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8월 5일 제1호로 의료보급품을 긴급히 유엔회원국과 국제기구에 특별 요청하였고, 1951년 1월 10월 제16호를 마지막으로 특별 지원요청서를 송부하였다. 긴급물자의 요청내용은 대체로 초기에는 의료, 보건위생, 식량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후 점차 의류, 모포, 목재, 교육비품, 일반 보급품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유엔군사령부의 특별 지원요청 내용은 차후 유엔회원국과 비회원국,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물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즉 유엔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이 유엔군사령부의 특별 지원요청에 의거하여 자국에 요청된 긴급물자들을 유엔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게 되었다.

<표 1>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제10호와 제16호 지원요청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전 회원국에 의료보급품과 피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유엔회원국 60개국 가운데 공산국 6개국(소련,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에게도 긴급구호를 위한 물자지원을 요청한 것은 유엔군이 유엔의 결의 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미였다고 생각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쟁 중 유엔회원국은 아니지만 공산국 가운데 헝가리가 유엔군을 지원하여 물자를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이채로운 현상이다.

전쟁기간 국제사회의 물자지원은 유엔군사령부의 특별요청뿐만 아니라 유엔사무총장의 요청과 유엔기구인 한국민간구제단과 유엔한국재건단, 그리고 미국정부와 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유엔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물자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 3. 물자지원기구의 주요 활동

#### 1) 미국 경제협조처(ECA)의 역할

경제협조처는 1948년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대외 원조 기구였다. 이 기구는 본래 유럽부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계획 집행하는 중심기구가 되었다.

해방 직후 한반도 장래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난항을 겪었고, 결국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에 1947년 11월 유엔한국임시위원회(UNTCOK)가 설치되어 한국문제를 주관하였고, 유엔총회는 그 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따라 대한민국을 한반도내 유일 합법정부로 결의하였다.<sup>13)</sup> 아울러 임시위원단은 정부수립 후 유엔한국위원회(UNCOK)로 전환되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정부는 수립 직후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 하에서 국민 경제안정을 위한 외국원조의 획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기본 경제체제를 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정부와 국민들은 미국과의 협조 하에 난관을 극복하면서 우리 경제를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육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정부는 1948년 11월 ‘한미 경제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정으로부터 재정권을 인수하고,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한미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으로부터 3년간 1억 2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sup>14)</sup>

한미경제원조협정은 경제력이 미약한 신생 한국에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 경제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 협정은 미국이 1948년도에 의결된 외국원조법에 의하여 서구제국에 제공하고 있던 경제협조처(ECA) 원조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13)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50쪽.

14)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1집; 한국은행, 『경제연감』, 1~210쪽.

있는 근거가 되었다.

당시 한국경제는 정부수립 이후 통화량의 증발, 재정적자 누적,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을 보였으나 미국으로부터 원조(ECA)를 지원받아 점차 안정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ECA 원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한국경제는 다시 추락하고 말았다.

ECA 원조는 전쟁발발로 중단될 때까지 8천 3백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미사용분 2천 6백만 달러는 유엔군에게 이양되었다.<sup>15)</sup> 이로써 ECA는 구호원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유엔군사령부에 넘겼고 이후 1950년 7월 31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원조관련 문제를 지원하였다.<sup>16)</sup> ECA의 원조임무는 최종 1950년 10월 24일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sup>17)</sup>

## 2) 한국민간구제단(CRIK)의 역할

전쟁초기 정부는 피난민 구호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주로 미국과 유엔의 구호물자에 의존하여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쟁난민에 대한 구호는 당시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황, 혼란에 빠진 행정체제, 그리고 부족한 물자와 예산 등으로 인해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950년 7월 대구와 부산지역에 피난민들이 집중되어 전쟁난민에 대한 생필품 지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었다. 전쟁초기 민간인에 대한 구호는 미국의 긴급조치에 의한 담요, 의복, 생활필수품 등의 물자에 의존하였으나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sup>18)</sup>

15) ECA 원조 미사용분은 이후 UNCAACK에 이양되어 SEC(Supplies from Cooperation)라는 명칭 하에 원조가 계속되었다.

16) 김학재, 앞의 논문, 20쪽.

17) US 8th Army Civil Affairs Section, *Civil Assistance Files, 1950*, NARA, RG 338, Entry A1 179, Box 1437, Folder : Nov, Dec 1950.

18) 개전 직후 미국의 긴급구호조치.

이에 유엔사무총장은 1950년 7월 31일 유엔의 전쟁난민 구호 결의에 이어, 9월 8일 유엔으로 기부되는 징수금과 기타의 모든 현금을 유엔군 사령관을 통하여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설치하였다. 민간구제단 원조의 책임은 1950년 9월 29일자 트루먼 대통령을 거쳐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sup>19)</sup>

그 후 민간구제단은 1950년 11월 2일 유엔군사령부와 한국정부가 설치한 중앙구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우리 정부가 전쟁기간(1950.7~1953.7) 미국 및 유엔으로부터 받은 구호원조의 총액은 4억 7천 1백 9십만 달러였으며, 그 중 민간구제단의 원조 비중이 3억 8천 8백 7십만 달러에 달하였다.<sup>20)</sup> 그 내역의 분포도는 식료품이 40%, 의료위생용품이 3.6%, 연료가 5.6%, 건설자재가 5.5%, 운수용품이 1%, 농업용품이 13%, 고무 및 고무제품이 1.3%, 옷감 및 의류가 24%, 잡화가 4% 등으로 식료품, 의류, 농업용품 등 소비재가 주종이었다. 따라서 민간구제단의 원조는 전쟁 중 소비재 원조를 통해 한국민들의 전시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휴전 이후에는 구호와 재건을 위해 1958년까지 지속되었다.

### 3)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역할

전쟁발발 직후부터 민간구호 문제에 대해 고심한 유엔은 한국에서 구호와 재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와 유엔한국재건단(UNKRA) 등 원조와 관련된 중추 기구를 설치하였다. 즉, 전쟁기간 중의 전쟁난민 구호는 민간원조사가 담당하였고, 전쟁종결 후 전후복구는 한국재건단이 담당하도록 각각 책임과 권한을 조정하였다.<sup>21)</sup>

19) 외무부, 『한국의외교 30년』, 1979, 139쪽.

20) 위의 책, 140쪽.

21) 손문식, 앞의 책, 462쪽.

낙동강방어선이 편성될 무렵인 1950년 8월 전쟁난민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물론 미 제8군도 구호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유엔군사령부가 이재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작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은 우선 전쟁초기 긴급한 구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 이전부터 한국정세에 밝은 경제협조처(ECA)를 통하여 구호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구호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사회문제화되자 미 제8군사령관이 구호책임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3일 특별참모부서인 보건복지부(Crawford T. Sams 준장)를 신설하여 구호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sup>22)</sup> 유엔군사령부의 보건복지부장은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유엔보건복지파견대(UN Public Health & Welfare Detachment)를 조직하여 한국에 급파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부흥과 재건을 위해 미 제8군의 민사처를 지도하는 것이었다.<sup>23)</sup>

이후 유엔군사령부 보건복지파견대는 1950년 10월 30일자로 미 제8군 예하에 민간원조사령부(Civil Assistance Command : CAC)가 창설되자 그에 흡수되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민간원조사령부는 챔페니(Arthur S. Champeny) 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1950년 11월 3일에 '유엔'이라는 이름을 부가하였고 1950년 12월 8일자로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로 다시 바뀌었다.<sup>24)</sup>

민간원조사(UNCACK)의 조직구성은 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이 있었고 예하에 행정, 보건, 복지, 위생, 보급, 공보교육, 경제부 및 각 도별 지역팀이 있었다. 1951년 9월 현재 75명의 장교, 95명의 민간인, 154명의 사병 등 총 323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5)</sup>

22) UNC, *Command Report for 1950.9.3*. 김학재, 앞의 논문, 18쪽 재인용.

23)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88쪽.

24) 손문식, 앞의 책, 460쪽; 김학재, 앞의 논문, 20~21쪽.

25) 김학재, 앞의 논문, 24쪽.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민간구호에 대해 전투지역은 각 군단 및 사단의 민사처가 담당하고 기타 지역은 민간원조사가 담당하도록 조정하였다. 따라서 민간원조사는 미 제8군 예하의 주요 부대로서 한국정부 및 각 도청과 구호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임무를 받았다. 또한 민간원조사는 유엔에서 직접 고용한 전문가들과 유엔사무총장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구호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정부의 고문으로도 활동하여 민간구호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sup>26)</sup>

당시 민간원조사의 기본 임무는 질병, 기아 방지를 통해 전선 후방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군사작전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며, 부차적인 임무는 한국의 경제부흥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후자의 임무는 경제협조처(ECA)가 그 사업을 중지함에 따라 인수한 것이었다.

미 제8군사령부 예하에서 민간인 구호활동을 전담하던 민간원조사는 1952년 8월 1일 유엔군사령부의 직할기구로 신설된 한국병참관구사령부(KCOMZ)에 통합되어 구호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기구도 휴전성립 직전인 1953년 7월 1일 한국민간원조사령부(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 : KCAC)로 개칭되었다.<sup>27)</sup>

민간원조사는 소속과 명칭이 수차례 바뀌었으나 그 업무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조직은 창설 직후부터 질병, 기아 해소 등 구호사업과 소규모 부흥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전쟁 중에 주로 구호물자의 요청 및 도입, 피난민 구호, 고아원 등의 수용시설 유지관리, 피난민 재정착 지원, 의료 및 교육시설 마련 등 다양한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민간원조사는 유엔군사령부 및 미 제8군에 소속되어 명령을 받는 부대였으며, 단순히 원조물자의 배분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군사점령지역 내에서의 민간인, 피난민 통제와 관리 업무도 수행했다.<sup>28)</sup> 이 기구는 군

2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89쪽.

27) 위의 자료, 226~227쪽. 한국병참관구사령부의 영문 명칭은 Korean Communications Zone Command(KComZ)이다.

28) 김학재, 앞의 논문, 5쪽.

내부의 민사기구에서 출발한 조직이었지만, 북한 점령정책이란 보다 포괄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걸고 창설된 조직이었다.

#### 4)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역할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지역 점령과 민사정책을 논의하던 시기에 이를 담당할 새로운 유엔기구의 창설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유엔은 10.7 총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설립하였다. 이어 12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종전 후의 한국재건 및 부흥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재건단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sup>29)</sup>

이에 유엔은 1950년 12월 1일 제5차 유엔총회 결의 410호(V)에 의거하여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창설하였다.<sup>30)</sup> 유엔군의 북진작전으로 인한 군사적 승리와 함께 한반도 통일이 목전에 다가오자 곧 경제재건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대표로 한국재건단을 편성한 것이다. 한국재건단은 총 7개국으로 구성되며, 구제필요에 대한 한도를 결정하는 일, 각국의 기여품을 입수하는 일, 원조물자의 구입 수송, 분배 및 이에 대한 이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그리고 구제금품의 분배 이용에 관하여 한국정부의 자문에 응하는 일 등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재건단은 창설 시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전전 수준으로 재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를 지원하여 구호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재건단은 1·4후퇴 시 부산으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자체 활동이 어려워져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렀고 휴전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29) 「동아일보」, 1950년 10월 19일자.

30)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39쪽.

활동하게 되었다.

중공군 참전이후 유엔군사령부는 전투물자 수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화물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선박을 이용한 물자수송과 화물의 하역은 군사작전 지원에 우선권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재건단의 활동은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았고, 이후 구호사업은 군의 통제 하에 민간원조사(UNCACK)가 중심이 되었다.

실제 한국재건단은 창설 이후부터 구호활동, 구호물자 운송, 지원창구의 단일화 등을 두고 민간원조사와 마찰을 겪었다. 결국 이 문제로 재건단장인 킹슬리(Kingsley)가 1951년 12월 말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역할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한국재건단은 한국에서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제1국면)에는 재건계획만을 수립하고, 전쟁종식 약 6개월 이후(제2국면)부터는 모든 구호와 재건사업의 책임을 맡는다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종전 시까지 민간원조사의 활동을 보좌하고 각국 정부에 원조 요청과 접수 역할을 하기로 했다.<sup>31)</sup> 이 합의에 따라 재건단의 1951년과 1952년의 활동은 민간원조사의 전쟁난민 구호계획을 지원하면서 차후 직접 실시할 아래와 같은 재건사업 계획에 주력하였다.

〈표 2〉 한국재건단의 재건 계획<sup>32)</sup>

부 문	세 부 사 업	할당금액(달러)
생 필 품	식량, 식염, 콩, 비료 등 수입	1천 4백만
주 요 기 계	공업재건용 기계수입	1천 1백 5십만
교 육	학교실험기구, 직업교육, 학교보수 및 재건, 수산학교 설립 등	8백만
전 력	변전 및 송전선 정비, 발전소 재건, 신발전소 설치 등	7백 1십만
교통 및 통신	항만 확충, 철로 및 침목 수리 등	7백만
식량 및 농업	농업연구, 수리사업 확충 등	6백 9십만
주 택	전쟁난민용 주택 건축 등	3백만
보건위생 및 후생	병원 재건, 이동진료소 설치 등	2백 5십만
지 하 자 원	광물연구소 재건, 광물장려금 등	2백만

31) 대한민국부흥부, 『부흥백서』, 1957, 179~180쪽; 국방방부, 『한국전란 2년지』, C459쪽.

32)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 C110쪽.

이후 한국재건단은 역할조정에 따라 민간원조사령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상당기간 그 역할이 미미하고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52년 10월 재건단은 처음으로 한국 구호 및 재건사업비로 7천만 달러를 획득함으로써 한국의 구호와 재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재건단은 명실 공히 한국의 구호와 재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sup>33)</sup>

한국재건단은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 교통, 통신 시설을 복구하고 의료, 교육 시설 등의 재건을 통해 민생안정에 주력하였고, 1958년까지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통해 전후 부흥사업에 크게 기여했다.<sup>34)</sup> 재건단의 사업은 당초의 목표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멘트 산업이나 섬유 산업 등의 부흥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재건단은 전쟁으로 인한 부상 병과 민간 환자의 치료, 그리고 의사 및 의료요원의 양성을 위해 국립의료원이 설립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sup>35)</sup>

## 4. 유엔을 통한 각국의 물자지원 활동과 규모

### 1) 기존 물자지원국 현황과 문제점

현재까지 물자지원국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다. 이것은 국내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의 기구간의 보고서에도 다소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마다 지원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원기준이나 보고기관, 그리고 시기 등이 각기 상이했기 때문이다.<sup>36)</sup> 유엔을 통한 물자지원국 현황에 대해 한국의 공식적인 자료는

33) 위의 자료, C107쪽.

34)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52쪽.

35) 이신화, 앞의 논문, 194쪽.

36) 2010년 9월 월드피스 자유연합이 6·25전쟁에 대한민국을 지원한 나라를 기준에 파악된

국방부의 『한국전란지』이다. 이 자료에서는 각국의 물자지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집계하고 있다.

다음 자료는 국방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4년 8월 31일까지 유엔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구호와 재건을 위해 물자를 지원한 나라들의 현황을 집계한 내용이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1954년 8월 31일까지 유엔을 통해 물자지원을 약속한 국가는 총 32개국이고 그 중 브라질, 칠레, 도미니카, 이집트, 레바논, 파나마 등 6개국은 지원약속은 하였으나 실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sup>37)</sup> 즉, 물자지원국은 참전국과의료지원국 21개국을 제외하고 총 26개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자료의 현황은 유엔의 특별요청에 의한 물자지원 내용과 결과만을 집계한 것이고 한국민간구제단(CRIK)이나 긴급지원(ERP) 등을 통해 지원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전란지 자료는 5년지를 마지막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1954년 9월 1일 이후의 상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기간동안 유엔의 물자지원 요청과 그에 따른 각국의 지원 약속에 의한 물자지원은 휴전이후 1958년까지 지속되었다. 위의 자료는 이러한 내용의 물자지원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

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지원국 20개국(군사편찬연구소,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제2권, 신오성, 2005, p.36) 외에 26개국(물자지원 19개국, 전후복구 6개국, 비공식 지원국 일본 1개국)을 추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영국 기네스북에 등재 기록하였다. 월드피스는 최초 전후복구에 스리랑카도 포함시켜 제외하였으나, 영국 기네스북의 자체 조사로 스리랑카가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창설 시 기권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UNCURK는 1950년 10월에 창설되었고 스리랑카는 유엔에 1955년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 국방부에서는 2012년 1월 기네스북사에 67개국에 관한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기네스사로부터 유엔결의 찬성의사를 표명한 국가들까지 포함할 경우 67개국이지만, 한국 국방부의 연구결과에 따라 등재내용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기네스사 카를로스 기록관리팀장이 국방부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에게 보낸 서한」(2012.1.24.일자).

37) 브라질의 경우 1950년 9월 5천만 Cruzeiro(2,702,703달러 가치)의 지원을 제외했으나, 미결계 잔액으로 남아 있다. *UNKRA J. McLean to Gaile Calub, ANNEX I (Emergency Relief Program: Korea, Summary of Assistance(As at 30 June 1953).*

〈표 3〉 각국의 한국 구호재건 상황(1954년 8월 31일까지 지원약속 및 지원)<sup>38)</sup>

구 분	긴급구호계획 및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의거한 지원약속 및 지원			지원 현황	
	현물	미결제 잔액	지원약속	지원총액	미결제 잔액
1 아르헨티나	-	-	500,000	500,000	-
2 브라질	-	2,702,703	2,702,703	-	2,702,703
3 버마(미얀마)	-	-	49,934	49,934	-
4 칠레	-	-	250,000	-	250,000
5 중국	634,782	-	634,782	634,782	-
6 쿠바	270,962	-	279,962	270,962	-
7 도미니카	-	-	10,000	-	10,000
8 에콰도르	99,441	-	99,441	99,441	-
9 이집트	-	-	28,716	-	28,716
10 엘살바도르	-	-	500	500	-
11 아이티	2,000	-	2,000	2,000	-
12 온두라스	-	-	2,500	2,500	-
13 아이슬란드	45,400	-	45,400	45,400	-
14 인도네시아	-	-	143,706	100,000	43,706
15 이스라엘	63,000	-	96,600	96,600	-
16 레바논	-	-	-	-	-
17 라이베리아	10,000	-	-	-	-
18 멕시코	346,821	-	-	-	-
19 파키스탄	373,285	-	-	-	-
20 파나마	-	-	-	-	-
21 파라과이	-	-	10,000	10,000	-
22 페루	58,723	-	58,723	58,723	-
23 사우디	-	-	20,000	20,000	-
24 우루과이	250,780	2,000,000	2,250,780	250,780	2,000,000
25 베네수엘라	80,842	-	180,842	180,842	-
26 오스트리아	-	-	174,474	174,474	-
27 캄보디아	27,429	-	27,429	27,429	-
28 서독	47,619	-	47,619	47,619	-
29 일본	50,000	-	50,000	50,000	-
30 모나코	-	-	572	572	-
31 스위스	-	-	255,814	255,814	-
32 베트남	1,943	-	11,943	11,943	-

38) 국방부, 『한국전란 5년지』, 1955, D19~21쪽; *Contributions by Govts Other than US*, RG 59, UD-07D78, Box.2. 브라질의 경우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특히, 앞의 통계는 한국민간구제단(CRIK)과 한국재건단 등의 물자지원 보고서들과 대조할 때 부분적인 오류마저 있음이 확인된다. 즉, 약속 금액을 지원하지 않은 나라 6개국의 내용을 한국재건단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후술하겠지만, 브라질을 제외하고 칠레, 이집트, 레바논, 파나마 등이 1953년 12월까지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상기 통계는 1954년 6월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것인데도 이들의 지원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며, 물자지원 내용을 완전하게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6·25전쟁에 관한 물자지원국 현황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물자지원국 현황에 관한 이상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항부터 각국의 물자지원 상황을 앞에 제시된 유엔의 특별요청에 의한 지원에 추가하여 각국이 지원한 물자지원에 관한 당시 보고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 2)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한 물자지원

유엔의 한국에 대한 물자지원은 1950년 7월 14일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회원국에 지원을 요청하자 전투부대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들이 식량, 의약품, 의류 등 비군사분야의 물자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서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고, 남아메리카국가들도 자체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유엔요청에 의거하여 자국의 능력과 현실에 따라 한국민들의 구호와 복구를 위한 물자 지원에 동참하였다.

먼저 유엔군사령부의 긴급물자에 대한 특별요청에 따라 1950년 7월부터 유엔회원국들이 지원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1951년 2월까지 지원의사를 밝힌 국가들(참전국과 의료지원국 제외)은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39) UNKRA, *Statement of Contribution Received and Anticipated through FY 1953*.

같다. 40)

〈표 4〉 유엔 회원국의 물자지원 제의 현황(1951.2.7일 현재)

국 가 명	지원 제의일	물자 품목	수 량	비 고
브라질	1950. 9. 22	크루제이트스	270만 달러 상당	요청 수락, 국회통과 대기
중국(대만)	1950.10. 4	석탄	9,900톤	직접 한국정부에 운송
		미곡	1,000톤	
		식염	3,000톤	
		DDT	2,000톤	
쿠바	1950.10. 2	사탕	2,000톤	제6호 요청 수락
		혈장	-	제1호 요청 미결정
		주정	10,000갤런	요청 수락
에콰도르	1950. 8. 1	의료물품	-	요청 미수락
	1950.10.12	미곡	500톤	제5호 요청 수락
아이슬란드	1950. 9.14	간유	125톤	요청 수락
이스라엘	1950. 8.22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 수락
레바논	1950. 7.26	현금	5만 달러	미결정
라이베리아	1950. 7.17	생고무	10톤	제8호 요청 수락
멕시코	1950. 9.30	두류, 닭고기		제5호 요청 수락
니카라과	1950.11.16	미곡	50톤	미결정
	1950.12.16	미곡	100톤	
			주정	5,000쿼트
파키스탄	1950. 8.29	소맥	5,000톤	제5호 요청 수락
파라과이	1950.11. 3	의료보급품	-	미결정
페루	1950.11.21	군화 밀창		미결정
우루과이	1950. 9.14	현금	200만 달러	미결정
	1950.10.26	모포	70,000매	제9호 요청 수락
베네수엘라	1950. 9.14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 수락

40)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C191~193쪽. 이 통계에는 유엔참전국과 의료지원국 등 21개국의 물자지원 현황은 제외하였다. 손문식, 앞의 책, 464~466쪽에는 브라질, 니카라과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UNCACK 자료에 의하면 미결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의 표에 의하면, 유엔의 특별 물자지원 요청에 따라 총 15개국이 1950년 7월 17일부터 1951년 2월 7일까지 물자지원 의사를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쿠바,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베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즉시 요청된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브라질, 레바논,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등 5개국이 지원제의를 하였으나 국내외의 사정으로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1951년까지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즉, 한국민간원조원사령부(UNCACK)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1년까지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총 15개국으로 파악된다.

〈표 5〉 UNCACK의 CRIK 물자지원 현황(1951년도) 보고<sup>41)</sup>

회원국 지원	항구	항구별 지원	총 계
멕시코			
파키스탄	부산	99,367,019	
중국(대만)	인천	32,165,911	
베네수엘라	홍남	10,663,911	
자메이카	마산	12,273,032	
헝가리	군산	77,781	
일본	대구	68,877	
버마(미얀마)	김포	73,718	158,359,679톤
쿠바	대전	16,799	3천 1백 9십 7만 달러
이스라엘	원산	14,823	(1천 9백 19억 3천 6백만)
캄보디아	형산	2,655	
코스타리카	청주	1,400	
에콰도르	원주	560	
아이슬란드	여수	1,868,074	
라이베리아	포항	1,765,390	

※ 총 15개국

41) UNCACK, *Statistical Report on Status of CRIK supplies Received against FY 1951*.

앞의 내용은 1951년까지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나라들과 항구별 물자접수 규모, 그리고 총액을 집계한 내용이다. 따라서 1951년도까지 한국민간구제단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총 15개국으로 파악된다. 이 자료는 국가별 제공한 물자 품목과 수량,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집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원국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상기의 15개 지원국 중에는 당시(1951년) 유엔비회원국인 자메이카, 헝가리, 일본, 캄보디아 등 4개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산국인 헝가리가 유엔군사령부의 물자지원에 동참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 자료에 더하여, 다음의 자료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에 보고한 한국민간구제단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50년 6월 22일부터 1952년 5월 22일까지 한국민간구제단을 통해 물자를 제공한 나라는 앞의 15개국에 더하여 4개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UNC의 CRIK 물자지원 현황('50.6.25~'52.5.22) 보고<sup>42)</sup>

회원국	식량(제의/지원)	의약품(제의/지원)	비누(제의/지원)	연료(제의/지원)
<b>아르헨티나*</b>	500,000/500,000	136,653/136,653	19,950/19,950	-
<b>오스트리아*</b>	201,026/201,026	81,085/81,526	15,250/11,844	-
버마(미얀마)	50,000/50,000	-	-	-
캄보디아	4,020/1,780	-	-	-
코스타리카	-	-	-	-
중국(대만)	346,532/346,532	41,123/41,123	-	229,475/ 229,475
쿠바	250,000/250,000	9,000/9,000	-	-
에콰도르	119,978/119,978	-	-	-
<b>이란*</b>	-	-	-	-
이스라엘	38,800/38,800	63,825/64,404	-	-
자메이카	25,167/25,167	-	-	-
멕시코	437,270/394,744	85,125/85,079	-	-
파키스탄	379,850/379,850	-	-	-
<b>우루과이*</b>	-	-	-	-
베네수엘라	38,450/38,450	58,745/44,842	20,450/20,450	-

※ 추가 4개국, 누계 19개국

42) UNC, *Estimated dollar value on UN contributions by contributing Nation for CRIK(25 June 1950-22 May 1952)*.

즉, 1951년까지 앞에서 제시한 15개국에 더하여 추가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이란, 우루과이 등 4개국이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오스트리아(1955년 가입)는 유엔비회원국이었다. 따라서 1952년 5월 22일까지 물자를 지원한 나라는 총 19개국으로 집계된다.

위의 통계에는 의류, 면직물 등의 구분이 없어 공란으로 비어 있으나, 이란과 우루과이도 물자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한국민간구제단(CRIK)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의 물자 액수를 산정한 자료에 의하면, 이란은 신발, 면직물 3,900달러를 제의하여 모두 지원했고, 우루과이 역시 신발, 면직물 250,780달러를 제의하여 모두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위의 두 통계자료는 보고 기관과 보고 시점의 차이가 있어 완전한 자료라고는 볼 수 없지만, 물자지원국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3)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통한 물자 지원

유엔한국재건단은 1950년 10월 북진 시 유엔이 전쟁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의 전후복구를 위해 조직된 기구였지만, 전쟁기간 동안부터 전후 195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구호와 재건에 크게 기여한 조직이었다. 한국재건단은 1951년 12월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와 일부 기능이 중복됨으로써 역할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전쟁 중에는 재건계획만을 수립하면서 원조사령부를 지원하고, 휴전이후 6개월부터는 구호와 재건의 중심역할을 맡았다.

전쟁기간 중 한국재건단에 물자 지원을 약속한 국가와 품목 등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재건단은 1953년 말까지 한국의 구호물자를 지원한 나라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sup>44)</sup>

43) *ibid.*, pp.17~18.

44) UNKRA, *Statement of Contribution Received and Anticipated through FY 1953*.

〈표 7〉 UNKRA의 물자지원 현황(1953.12.31.일까지)

회원국	약속금액	'52년 12월까지	'53년 6월까지	'53년 12월까지	지원총액
아르헨티나	500,000	500,000	-	-	500,000
오스트리아	4,415,036	412,326	685,440	315,045	1,412,811
버마(미얀마)	49,934	49,934	-	-	49,934
칠레*	250,000	-	-	250,000	250,000
도미니카*	860,000	-	200,000	75,200	275,200
이집트*	28,716	-	-	9,189	9,189
엘살바도르*	500	-	-	500	500
과테말라*	목재 수천톤				미산정
온두라스*	2,500	2,500	-	-	2,500
인도네시아*	100,000	100,000	-	-	100,000
이스라엘	33,600	33,600	-	-	33,600
레바논*	50,000	50,000	-	-	50,000
라이베리아	15,000	15,000	-	-	15,000
파나마*	3,000	-	-	3,000	3,000
사우디아라비아*	20,000	20,000	-	-	20,000
시리아*	11,408	-	-	3,650	3,650
베네수엘라	70,000	70,000	-	-	70,000
오스트리아	40,000	40,000	-	-	40,000
스위스	30,000	-	30,000	-	30,000
베트남*	10,000	10,000	-	-	10,000

※ 13개국 추가, 누계 32개국

위의 한국재건단 보고에 의하면, 1953년 12월 31일까지 한국재건단을 통해 물자지원을 약속한 국가와 약속 금액, 그리고 기간별 지원 액수 등이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53년 말까지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참전국과 의료지원국을 제외하고 총 20개국으로 확인된다.

상기의 20개국 가운데 위의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해 지원한 국가와 중복된 국가들을 제외하면, 칠레, 도미니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레바논, 파나마,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스위스, 베트남 등 13개국이 새로이 물자를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유엔비회원국으로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요청에

따라 물자 지원에 동참하였다. 특히 상기 자료는 파나마가 1953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약속한 3천 달러의 물자를 모두 지원했음을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1953년 말까지 한국민간구제단과 한국재건단을 통해 지원한 국가는 총 32개국으로 집계된다.

이 통계에 더하여, 한국재건단이 1956년 6월 30일까지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의 지원 현황을 보고한 자료가 있다. 아래의 자료는 1954년 1월부터 1956년 6월 30일 기간 새로이 한국재건단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다.<sup>45)</sup>

〈표 8〉 UNKRA에 물자지원 약속 및 지원 현황(1956.6.30.일까지)

회원국	약속금액	현금지원	물품지원	지원총액	미결제잔액
아르헨티나	500,000	-	500,000	500,000	-
오스트리아	3,616,446	3,616,446	-	3,616,446	-
버마(미얀마)	49,934	-	49,934	49,934	-
캄보디아	1,000	1,000	-	1,000	-
칠레	250,000	250,000	-	250,000	-
도미니카	10,000	-	-	-	10,000
이집트	28,716	-	28,716	28,716	-
엘살바도르	500	500	-	500	-
과테말라	7,704	-	-	-	7,704
온두라스	2,500	2,500	-	2,500	-
인도네시아	143,706	143,706	-	143,706	-
이스라엘	36,100	-	36,100	36,100	-
레바논	50,000	50,000	-	50,000	-
라이베리아	15,000	-	15,000	15,000	-
멕시코	40,000	-	-	-	40,000
파키스탄	315,000	315,000	-	315,000	-
파나마	3,000	-	-	-	3,000
<b>파라과이*</b>	10,000	10,000	-	10,000	-
사우디아라비아	20,000	20,000	-	20,000	-
베네수엘라	100,000	30,000	70,000	100,000	-
<b>리히텐슈타인*</b>	465	465	-	465	-
<b>모나코</b>	1,144	858	-	858	286
스위스	313,954	290,698	23,256	313,954	-
<b>바티칸(교황청)*</b>	10,000	10,000	-	10,000	-
베트남	10,000	10,000	-	10,000	-

※ 4개국 추가, 누계 36개국

45) UNKRA, *Statement of government pledges and contributions to the UNKRA as at the 30 June 1956.*

위 한국재건단의 보고에 의하면, 전술한 1953년 말까지 한국민간구제단(CRIK)과 한국재건단(UNKRA)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31개국을 제외하면, 새로이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교황청 등 4개국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모두 유엔비회원국이었다. 따라서 1956년 6월말까지 한국민간구제단과 한국재건단을 통해 한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총 36개국으로 파악된다.

위의 통계표 가운데 도미니카, 과테말라, 멕시코, 파나마 등 미결제로 집계된 것은 1953년도까지 한국재건단에 이미 물자를 지원한 이후 다시 추가지원을 약속한 금액에 대해 아직 결제하지 않은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이 국가들은 이미 앞의 자료에서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56년 6월까지 한국재건단을 통한 물자지원과는 별도로, 같은 시기까지 유엔의 긴급구제계획에 따라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도 있다. 다음의 자료는 한국재건단이 유엔총회에 보고한 유엔의 한국 긴급구제프로그램(The Emergency Relief Programme, Korea)에 따른 물자지원국 현황에 관한 내용이다.<sup>46)</sup>

〈표 9〉 유엔의 긴급구제계획(ERP) 지원 현황(1956.6.30.일까지)

지원국	약속 금액	지원 총액	미결제 잔액
브라질	2,702,707	-	2,702,703
캄보디아	27,429	27,429	-
중국(대만)	634,782	634,782	-
쿠바	270,962	270,962	-
에콰도르	99,441	99,441	-
아이티*	2,000	2,000	-
아이슬란드	45,400	45,400	-
이스라엘	63,000	63,000	-
라이베리아	10,000	10,000	-
멕시코	346,821	346,821	-
파키스탄	378,285	378,285	-
페루	58,723	58,723	-
우루과이	2,250,780	250,780	2,000,000
베네수엘라	80,842	80,842	-
독일(서독)*	47,619	47,619	-
일본	50,000	50,000	-
베트남	1,943	1,943	-

※ 3개국 추가, 누계 39개국

46) UNKRA, *Statement of government pledges and contribu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ertaining to the Emergency Relief Programme, Korea, as at 30 June 1956.*

위의 한국재건단의 보고에 의하면, 1956년 6월말까지 유엔의 긴급구제계획에 따라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집계되었다. 17개국 가운데 이전에 한국민간구제단과 한국재건단을 통해 이미 지원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추가로 지원한 국가는 아이티, 페루, 독일(서독) 등 3개국이다. 아이티의 경우는 휴전 직전인 1953년 5월 4일 가공 삼베(42곤포)를 지원하였으나 그 시점에는 가격책정이 안되었고, 1954년 1월~1956년 6월 어느 시점 2,000달러(현재가 2만 4천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어 지원국으로 집계된 것이다.<sup>47)</sup> 서독은 유엔비회원국으로 지원에 참여하였고 1973년 유엔에 가입하였다.

앞의 36개국에 3개국을 추가하면 물자지원국은 총 39개국으로 파악된다. 위의 17개국 가운데 쿠바, 에콰도르, 아이슬랜드, 일본은 이미 1951년 한국민간구제단을 통해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재건단을 통해 물자를 지원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긴급구호계획에 이란 및 니카라과 정부의 물자지원 제의는 수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엔군사령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sup>48)</sup> 이란의 경우는 이미 앞의 한국민간구제단에 물자지원자료(UNC의 CRIK 물자지원 현황보고)에서 의류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sup>49)</sup>, 니카라과의 경우는 최초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50년 11월 16일 미곡과 주정 지원을 제의하였으나 보류되었고. 그 이후 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sup>50)</sup> 브라질의 경우도 최초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50년 9월 22일 2백 7십만 2천 7백 7달러 상당의 물자(Cruzeiros, 5백만)를

47) UNKRA, *Emergency Relief Program : Korea, Summary of Assistance as at June 1953(Annex 1)*, No.4.

48) UNKRA, *Statement of government pledges and contribu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ertaining to the Emergency Relief Programme, Korea, as at 30 June 1956*, Note.

49) UNC, *Estimated dollar value on UN contributions by contributing Nation for CRIK(25 June 1950-22 May 1952)*.

50)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2*, p.214. No.20; General Records Department of State., *Contributions by Govts Other than US*, RG 59, UD-07D78, Box.2.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sup>51)</sup>, 처음부터 국회 내에서 난항을 겪다가 결국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브라질은 모든 자료에 정확히 같은 액수가 미결제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되었다.<sup>52)</sup> 따라서 1956년 6월말까지 한국민간구제단과 한국재건단, 그리고 유엔한국긴급구제계획으로 지원한 국가의 수는 총 39개국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파악한 유엔물자지원국 현황은 다음의 1958년 유엔연감(Yearbook of the UN)을 통해서도 교차 확인된다.<sup>53)</sup> 유엔연감에 의하면, 1958년까지 한국재건단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의 현황, 지원약속 액수, 그리고 실제 지원 액수 등이 상세하게 집계되어 있다.

〈표 10〉 UNKRA에 물자지원 약속 및 지원 현황(1958.12.31.일까지)

지원국	약속 금액	지원 액수	미결제 잔액
아르헨티나	500,000	500,000	-
오스트리아	179,474	179,474	-
버마(미얀마)	49,934	49,934	-
캄보디아	1,000	1,000	-
칠레	250,000	250,000	-
도미니카	10,000	10,000	-
이집트	28,716	28,716	-
엘살바도르	500	500	-
과테말라	7,704	7,704	-
온두라스	2,500	2,500	-
인도네시아	143,706	143,706	-
이스라엘	36,100	36,100	-
레바논	50,000	50,000	-
라이베리아	15,000	15,000	-
멕시코	40,000	40,000	-
파키스탄	315,000	315,000	-
파나마	3,000	-	3,000
사우디아라비아	20,000	20,000	-
베네수엘라	100,000	100,000	-
리히텐슈타인	465	465	-
모나코	1,144	1,144	-
스위스	313,954	313,954	-
바티칸(교황청)	10,000	10,000	-
베트남	10,000	10,000	-

※ 추가 국가 없음, 누계 39개국

51)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C191~193쪽.;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2*, p.218. No.24.

52) General Records Department of State, *Contributions by Govts Other than US*, RG 59, UD-07D78, Box.2.

53)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8*, p.103.

위의 유엔연감 자료에 의하면, 1958년 말까지 한국재건단에 물자지원을 약속한 국가는 22개국으로 집계하고 있고, 파나마만이 미결제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파나마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한국재건단에 1953년 4/4분기까지 이미 약속한 금액 3천 달러의 물자를 지원하였으며<sup>54)</sup>, 위의 내용은 이후 추가지원 약속금액을 아직 미결제한 것을 표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상기 자료에는 지금까지 앞에서 파악한 1956년 6월까지 물자를 제공한 총 39개국 이외에 추가로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체로 앞에서 제시한 한국재건단의 보고 내용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유엔구호기구들이 대략 1958년까지 활동한 것에 비추어보면, 이상까지 검토한 내용에 1958년 12월 31일까지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판단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6·25전쟁 시기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와 현황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주로 앞에서 정리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문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물자지원국 현황을 시기 및 지원기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 개전 직후부터 1951년까지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해 라이베리아, 멕시코, 버마(미얀마),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일본, 자메이카, 중국(대만), 쿠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헝가리 등 15개국이 물자를 지원하였다. 이후 1952년 5월 22일까지 추가로 아르헨티나, 이란,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등 4개국이 물자를 지원하여, 한국민간구제단을

54) UNKRA, *Statement of Contribution Received and Anticipated through FY 1953*.

통해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총 19개국이었다.

한편 개전 이후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통해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20개국이었으며, 그 중 한국민간구제단에도 중복하여 지원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과테말라, 도미니카, 레바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스위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칠레, 파나마 등 13개국이다. 마찬가지로 1956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바티칸(교황청), 파라과이 등 4개국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유엔 긴급구제계획(ERP)을 통해 1956년 6월 30일까지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한국민간구제단과 유엔한국재건단을 통해 중복 지원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독일(서독), 아이티, 페루 등 3개국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엔참전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5개국을 제외한 상기 물자지원 상황을 종합하여 표로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다음 도표에는 지원국가, 지원기구, 연도, 그리고 물자 및 액수 등을 정리하였다.<sup>55)</sup> 그 중 브라질의 경우는 1950년 9월 유엔의 요청에 따라 270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국내문제로 1958년까지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볼리비아의 경우는 최초 전문장교 30명의 파견을 제의하였으나 유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sup>56)</sup>, 그 이후 유엔연감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니카라과의 경우는 1950년 11월 16일 쌀과 주정을 제안했으나 수송문제로 인해 지원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57)</sup> 국제 관례상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국가도 큰 의미가 있다.

55) General Records Department of State, *Contributions by Govts Other than US*, RG 59, UD-07D78, Box.2.

56) UN,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2, p.214. 현재 기네스북에도 지원의사를 표명한 나라들을 포함하여 모두 67개국(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지원 39개국, 지원의사 표명국 7개국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

57) *ibid.*, p.214.

〈표 11〉 물자 지원 현황

	국 명	제외시기	지원기관	지원액	지원시기	비고
1	과테말라		UNKRA	7,704	53.12 이전	목재(미산정)
2	도미니카		UNKRA	275,200	53.6	
3	독일(서독)		ERP	47,619(현물)	54.8 이전	
4	라이베리아	50년	CRIK	15,000(현물)	51년	생고무
5	리히텐슈타인		UNKRA	465(현금)	56.6 이전	
6	레바논	50년	UNKRA	50,000(현금)	52.12 이전	현금
7	모나코		UNKRA	1,144	54.8 이전	현금, 물자
8	멕시코	50년	CRIK	346,821(현물)	51년	두류, 닭고기
9	버마(미얀마)		CRIK	49,934(현물)	51년	식량
10	베네수엘라	50년	CRIK	180,842	51년	현금, 의료품
11	<b>베트남</b>	<b>50년</b>	<b>UNKRA</b>	<b>11,943(현물)</b>	<b>52.12 이전</b>	<b>현금, 물자</b>
12	사우디아라비아		UNKRA	20,000(현금)	52.12 이전	
13	시리아		UNKRA	3,650	53.12	
14	스위스		UNKRA	313,954	53.6 이전	현금, 물자
15	아르헨티나		CRIK	500,000(식량)	52.5 이전	식량, 의약, 비누
16	아이슬란드	50년	CRIK	45,400(현물)	51년	간유
17	아이티		ERP	2,000(현물)	54.8 이전	
18	이스라엘	50년	CRIK	96,600(현물)	51년	미곡, 의약
19	이란		CRIK	3,900(현물)	52.5 이전	미곡, 직물
20	이집트		UNKRA	28,716(현물)	53.12 이전	
21	인도네시아		UNKRA	143,706(현금)	52.12 이전	
22	일본		CRIK	50,000(현물)	51년	
23	에콰도르	50년	CRIK	99,441(현물)	51년	미곡
24	엘살바도르			500(현금)	53.12 이전	
25	오스트리아		CRIK	3,616,446	52.5 이전	현금, 미곡
26	온두라스		UNKRA	2,500(현금)	52.12 이전	
27	우루과이	50년	ERP	250,780(현물)	54.8 이전	모포 등
28	자메이카		CRIK	25,167(현물)	51년	미곡
29	대만	50년	CRIK	634,782(현물)	52.5 이전	석탄, 미곡, 연료
30	칠레		UNKRA	250,000(현금)	53.12	
31	쿠바	50년	CRIK	270,962(현물)	51년	미곡, 의약
32	캄보디아		CRIK	27,429(현물)	51년	현금, 미곡
33	코스타리카		CRIK	?	51년	물품
34	파나마		UNKRA	3,000	53.12 이전	
35	파라과이	50년	UNKRA	10,000(현금)	54.8 이전	
36	파키스탄	50년	CRIK	378,285(현물)	51년	소맥, 현금
37	페루	50년	ERP	58,723(현물)	54.8 이전	군화발창
38	헝가리		CRIK	?	51년	물자
39	교황청		UNKRA	10,000(현금)	56.6 이전	
1	브라질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2	니카라과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3	볼리비아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1	포르투갈					관련 사실 없음
2	스페인					관련 사실 없음
3	아일랜드					관련 사실 없음
4	이라크					관련 사실 없음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라크의 경우는 유엔지원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수집 확인하고, 또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자료를 공식 요청하여 확인하였다.<sup>58)</sup> 그 결과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라크는 유엔의 지원 결의에 찬성의사 표명한 바 있고 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1955년 한국구호를 위해 물자를 지원해 주도록 설득하였다는 사실이 있지만, 국가의 지원내용이나 지원 의사를 표명한 사실 자체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sup>59)</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25전쟁 시 유엔을 통해 한국을 지원한 국가는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국 39개국 등 모두 60개국이다. 이 수치는 당시 세계가 독립국가 93개국, 유엔회원국 60개국임을 고려하면, 전 세계국가 중 63%가 한국을 지원한 것이며, 특히 헝가리를 포함하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스위스, 서독, 이스라엘, 일본,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많은 유엔비회원국들도 한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호와 재건을 위해 동참하였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전쟁기간 한국에 지원한 국가 현황 문제에 비중을 둔 이유로 각국 물자지원의 배경이나 지원과정, 그리고 성격 등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또 참전지원 국가와 의료지원 국가들의 물자지원 현황에 관해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3.4.1,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유엔, 유엔군, 유엔결의, 참전지원, 의료지원, 물자지원, 경제협조처, 한국재건단

58) 국방부는 이라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물자지원 또는 의사 표명과 관련한 해당 정부의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포르투갈 대사가 서유럽과장에게」(2012.2.21); 주이라크 국방무관부11-213('11.9.21); 주스페인 국방무관부11-166('11.9.8)

59) UNKRA, *FY 1955(Governments to be Approached)*; General Records Department of State, Contributions by Govts Other than US, RG 59, UD-07D78, Box.2.

<ABSTRACT>

## UN Member Nations' Support during the Korean War: Emphasis on Supply Support

Yang, Yong-jo(Chief of Military History, IMHC)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responding to the UN resolution and request, many countries participated in supporting supplies to Korea. Burma(Myanmar), Venezuela, Israel, Iceland, Ecuador, Japan, Jamaica, China(Taiwan), Cuba, Cambodia, Costa Rica, Pakistan, and Hungary provided supplies through CRIK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until 1951. Thereafter, four countries: Argentina, Iran, Austria, and Uruguay joined in supplying materiel and the number of nations helping CRIK increased to nineteen.

Meanwhile, countries participated in supporting through UNKRA increased to 20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Korean War up to the last day of 1953. Through CRIK, 13 countries were added: Guatemala, Dominica, Lebanon, Vietnam, Saudi Arabia, Syria, Switzerland, Egypt, Indonesia, Honduras, El Salvador, Chile, and Panama. 21 nations which provided either the ground troops or medical units are not included. In the same manner, four additional countries were confirmed as having participated in rescue efforts. Germany(West), Haiti, and Peru were three nations that offered supports under ERP's authorization excluding nations from the CRIK and UNKRA statistics.

The diagram presented above distinguishes the names of supporting countries, organizations, years, supplies and amounts. Brazil for instance promised to transport \$2.7 million worth of materials, according to UN's global request. However, it failed to support due to domestic issues. In case of Bolivia, the UN disinclined to acquiesce the dispatching of 30 professional officers, and no supplemental offers were confirmed on either

UN almanac or other data. Nicaragua proposed offering raw rice and liquors, yet was not accepted due to transportation problem. Certain countries that demonstrated its intention to ai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ustoms would still be significant.

Countries like Portugal, Spain, Ireland, and Iraq additionally verified data related to the United Nations' support plans and also officially confirmed the materials through their embassy's. As a result, all four countries had stated approval of the UN's supporting resolution. Moreover, there was an accusation that these countries were persuaded by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Canada to provide aid, but that was not verified.

As mentioned above, a complete number of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through United Nations was 60: 16 war-participants, 5 medical backup, and 39 material supporting countries. This number represents that 63 percent of all nations actively responded, since there were 93 independent countries and 60 UN members at that time. In particular, countries such as Hungary, Liechtenstein, Monaco, Switzerland, West Germany, Israel, Japan, Austria, and Vietnam that were not the members of United Nations also joined to give a helping hand to maintain peace and provide relief activities in the rehabilitation efforts in Korea.

Key Words : the Korean War, UN's Support, 60 countries, Material Supporting, ECA, CRIC, UNKRA, Rehabilitation